

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(안)

<신구대비표>

○ 세부내용(관리규정,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등)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6조(관리센터 지정신청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을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‘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서’에 의거 관할 시·도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관리센터 지정신청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제1-1호서식 ----- ----- 지정신청서’ 및 제1-2호 서식 ‘자원봉사활동 계획서’----- -----.</p>	<p>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서식 신설 * 붙임 1 서식</p>
<p>제7조(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)</p> <p>① 관리센터는,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⑥ (생략)</p>	<p>제7조(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)</p> <p>① ----- 신청기관의 장¹⁾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각주1)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 :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(급여)를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자</p> <p>②~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자격 기준 명시</p>
<p>제9조(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자원봉사활동일지(별표2 참조)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즉시 등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④~⑦ (생략)</p>	<p>제9조(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30일 이내 ----- -----.</p> <p>④~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부처간(행정안전부) 자원봉사 활동인증 기준 공통 적용</p>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제14조(모니터링) ① 중앙관리본부는 시·도 및 시군구관리본부, 기타 관리센터(지정신청 시설 포함)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·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·군·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(지정신청 시설 포함)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~⑦ (생략)</p>	<p>제14조(모니터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하여야 한다.</p> <p>④~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의무 조항으로 변경</p>
<p>제15조(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) ① 시·도관리본부는 시·군·구관리본부 또는 관할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5조(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종교적, 정치적, 영리적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였거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</u></p> <p>⑤ 제16조 제1항, 제2항 및 인증요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증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리센터는 인증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그 기능을 제한한다.</p>	<p>관리센터 관리 강화 조항 신설</p>
<p>제17조(보고) ① 시·도관리본부는, 매연도별 관할 사업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보고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별지 7호 서식</u> ----- -----</p> <p>-----.</p>	<p>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서식 신설 * 붙임 2 서식</p>
<p>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신규대비표</p>	<p>•붙임 3 참조</p>	
<p>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신규대비표</p>	<p>•붙임 4 참조</p>	

붙임 1

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(안)

구분	현행	개정안	비고
<p>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</p>	<p>○ <신설></p>	<p>○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 참여 - 시간적용 기준 : 회당 4시간 - 자원봉사 시간 인정 횟수 · 임상시험 종료 시까지 적용 - 참여자 인정기준 ·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760호)에 따른 임상시험 참여자에 한하여 적용</p>	<p>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봉사 시간 인정기준 마련</p>
	<p>○ 물품 및 현금기부 등 -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</p>	<p>○ 물품 및 현금기부 등 -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*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재료를 봉사자가 구매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 불가</p>	<p>물품·현금 기부에 대한 봉사활동 불인정 세부 기준 마련</p>
	<p>○ 온라인 돌봄 봉사활동 - 사회복지 돌봄 대상자 안부 확인 등 온라인 캠페인 일환으로 계획에 따라 세부 인정 기준 등이 승인된 일감에 한하여 실적등록 가능 (월 1시간 이내) ※ 중앙관리본부에 의해 사전 계획 및 승인된 일감에 한하여 제한적 실적 인정</p>	<p>○ <삭제></p>	<p>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기준 삭제</p>

붙임 2

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(안)

현행			개정안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VMS 가입 만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○ 활동내용 및 인정 기준 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VMS 가입 자원봉사자 ○ 활동내용, 인정방식 및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'에 준하는 활동으로 확대 ○ 증빙자료 :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(활동사진, 활동내용 등 포함) 	부처간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 공통 적용
활동내용	인정 방식 및 기준	증빙		
마스크 제작	일일 최대 4시간 이내 시간인증 <마스크 5개 1시간 인정>	실적등록 전 활동일지 본인 서명		
도시락 (밀반찬 등) 조리 및 배달	일일 최대 2시간 이내 시간인증 <조리(1시간) 및 배달(1시간 이내 인정>	증빙사진(조리·배달) 및 본인 서명 활동일지 제출		
안부전화	월 1시간 이내 시간인증 <주 2회이상 연락>	통화내역 캡처 및 안부전화일지 제출 필수		